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광현
충남대학교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Kwang-Hyeon Se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도 전기 분야 전문가에게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공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검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법적인 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가 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 감리업자 ·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력을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법률 제 5,132호로 전력기술 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3년째 접어든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실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영 및 제도 자

체의 문제점으로 과거 시공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임 감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지적과 해결방안 제시는 미흡하다.

따라서 WTO 협정 체결로 감리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감리업체의 국내 진출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의 주체인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 등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감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제도는 책임 감리제도로서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도 되어 있으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준공 단계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책임 감리제도가 무색한 실정이다.

또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감리업자 선정, 감리대가 기준, 감리원 배치, 교육제도 등에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함으로써 정당한 감리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수주를 위해 사업주(시공사)에게 인위적인 감리, 경도 감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 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기본체제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현행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논문 · 간행물 · 학술지 · 서적 등의 문헌 연구방법과 외국의 공사감리제도 비교 및 관련 법 · 규정을 조사하여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설정한 이론적 기준을 토대로 감리제도의 현황과 운용실태 및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무경험과 각종 문헌 및 법령을 숙지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완 개정함으로써 현실여건 속에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발주자 · 감리업자 · 시공업체 등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법적 제도적 문제, 시공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리 기능과 역할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의한 감리

1. 대상건축물 : 전기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 변경 · 보수공사 (600V 초과전압 또는 75kW이상 사용 시설물)
2. 성격 : 책임감리
3. 보수기준 :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4. 종합감리업 : 감리대상 시설물의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 발전전설비용량 10만 kW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10만V 미만의 송. 배전선로 20km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5천 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5. 감리계약의 공사(법 제12조제2항 제2호)
 ㉔ 정부·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공사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③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 공사
 ④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 비상조명등 및 비상환센트 공사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
 배전설비 공사
- ⑥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
 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⑦ 전력시설물 중 도둑, 건축 및 기계부분의 설비공사
 ⑧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⑨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6. 감리원 배치신고(법적근거)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②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③ 전력기술용역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6-68호 '06.07.05)

7. 감리원수 산출방법 : 감리원수 = 1.417(500억 초과
 시:1.6192)X^{0.769} (X : 보통공공공사비)
- ① 감리공동수급 시 감리원 산출 방법
 공사비에 의하여 감리원배치인월수를 산정 후 지분율에 의하
 여 업체별 감리원수 산정
 (예) 총공사비 30억원으로 2개의 감리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지분
 율이 각각 A업체 : 40%, B업체 : 60%인 경우
 - 총배치인월수 : 1.417 × (30)^{0.769} = 19.38인월
 A업체 : 19.38인월 × 40% = 7.75인월
 B업체 : 19.38인월 × 60% = 11.63인월
 -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의 지분율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각각
 정하거나 전체에서 정할 수 있음.
-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방법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직접인건비 비율의 20%를 범위로
 산출되나 고시 별표2의 감리원배치인월수를 충족할 경우 비상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 할 수 있고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
 장에 중첩배치가 가능하며, 배치신고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까지로 함.
- ③ 환산비의 적용
 직접인건비는 책임감리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책임감리원이 고급 가리원이상일 경우에는 환산비 적
 용

2.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 현황과 실태분석

2.2.1 관련법 및 규정의 문제점

-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 :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사용전검사) 및 제65조(정기검사)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
 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력 분야 전문가에게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공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
 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
 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
 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

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2.2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발
 주자 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
 을 위하여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감 리를 발주 하여야 한다.(일반 건
 축물에 적용)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
 업자를 입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
 치지 못하는 자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
 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
 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계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
 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초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감리업자·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격적심사제도(PQ심사) 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2.2.3 운용측면에서의 문제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제9항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 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가 제 1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한다.(공동주택에 적용)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
 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
 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
 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
 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2.2.4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7조의4 :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
 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 제1호제2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
 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공동 건축물에 적용)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
 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
 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3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2.3.1 관련법 및 규정의 개선방안

공사 준공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
 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감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
 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검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
 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운영의 방법으로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혼란을 줄이고 연착륙을 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건물의 용도, 연면적, 수전용량 등을 감
 안)

2.3.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가 능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감리업자·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 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처럼 법규 및 지침서에 공사 중지권 및 재시공 명령권을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계약서에 그러한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시공 방법, 공법, 기술, 시공 순서 등에 대해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시, 감독, 충고 등을 금지하는 등 상주 감리원의 책임 의무와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 부실 감리 제제의 경우 법에 의한 형량 및 벌금형 규정을 지양하고 외국의 사례(미국, 독일, 싱가포르)처럼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에 비례하여 손해 발생분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영세한 감리업체 및 위험한 특수공사에 투입되는 감리원을 위해 감리전문 보험제(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PLI)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3 운용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대가도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감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경쟁을 거쳐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감리원을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토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책임감리제도가 요구하는 책임감 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리방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3.4 운영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발주처가 자유재량으로 필요시마다 감리원에게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대폭 줄여 각종 보고서를 단순화·내실화하고, 감리업무 지침서에 있는 보고 양식을 현실에 적합하게 축소·개선하고, 설계·입찰·착공·감리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비치하고, 감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는 다양한 주체의 부정기적인 수시 감사를 지양하여 정기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주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감사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심사(PQ 심사)시에 책임 감리원은 경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력 및 기술사 자격자를 우대하여 감리원의 기본 자질인 전문적 응용능력을 강화하는 등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당해 공사규모 및 용도를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사들의 의무적으로 배치 감리기술의 전문화 및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업계 및 학계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공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권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권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업무인 사용권 검사 제도를 감리업자에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가 능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감리업자·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 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심사(PQ 심사)시에 책임 감리원은 경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력 및 기술사 자격자를 우대하여 감리원의 기본 자질인 전문적 응용능력을 강화하는 등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당해 공사규모 및 용도를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사들의 의무적으로 배치 감리기술의 전문화 및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업계 및 학계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설 감리제도에 비하여 열악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가 주요과제의 개선을 통하여 감리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 운용되고 또한 전기 감리기술의 전문화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1] 이용진,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 산업대학원, 2005. 12.
-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2008.09 현재시행)
- [3] 양승준, 우리나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
- [4] 박환표 외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2003. 12.
- [5] 이완우, 전기공사 및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동국대 산업기술원 경대학원, 2003. 12